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주 의무에 대해

### 들어가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사업주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재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의기구이다. 사업장의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만들고 실천한다면, 이는 효과적인 산재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 위원들의 선출 방법, 자격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다만, 업종, 상시노동자 수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원

의 임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 임기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위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회의는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중 노동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는데,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산

재 예방 방안들을 함께 만들고 이를 실천한다면, 효과적인 산재 예방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들을 위의 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심의·의결 사항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노동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